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훈령)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 제·개정 이유

- 우선심사 대상을 재난관련 출원까지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21. 6. 23. 시행)을 반영하여 국가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 우선심사 급증에 대응하여 우선심사 일정관리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급증의 주요인인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 제도를 조정하여 우선심사 제도를 안정화하며,
- 정보제공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리는 국민제안 내용을 반영하고 출원인 등이 추가검토 원할 시 심사관이 추가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 사유로 지정하여 출원인 이익 보호를 강화하며,
- 기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특허·실용신안 심사 사무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난관련 출원을 우선심사할 시 착수기한을 2개월로 규정(제66조제1항 제1호)
- 나. 우선심사 급증에 대응하여 우선심사 일정관리 부담을 경감(제21조제1

항, 제21조의2, 제66조제1항본문, 제66조제2항)

다. 고객 수용도, 他 대상과의 비교,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심사 제도 취지에 맞춰 긴급처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의 착수기한을 연장하여 일반심사 지연을 최소화(제66조제1항제3호, 제66조제1항제4호)

라.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에도 반려-재조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재조사납품일로부터 착수기한이 적게 남은 경우 예외적으로 착수기한을 1개월 연장(제66조제1항단서)

마. 출원인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적극적 방어기회 제공을 위하여 정보제공시 출원인에게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림(제83조)

바. 처리기한에 임박하여 출원인이 추가로 검토받길 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심사관이 심사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제7조제11호)

사. 심사순서, 2회 이상 취소환송, 우선심사 처리기간 기산일 등 기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함(제7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59조제2항)